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

2016.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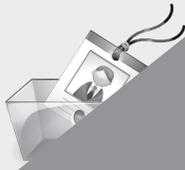


본 자료는 2014년 11월 발행된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내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정리하여 놓은 것으로 광고성 정보 전송방식과 내용에 따라 답변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차후에 질의 사항 및 이에 대한 답변은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게시일 : 2015년 2월 6일

1차 개정판 게시일 : 2015년 12월 30일

2차 개정판 게시일 : 2016년 10월 00일



CONTENTS

1.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3
2. 수신동의(제50조제1항 본문)	13
3. 수신동의 예외(제50조제1항 단서)	16
4.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제50조제2항)	20
5. 야간수신동의(제50조제3항)	22
6. 표기의무(제50조제4항)	23
7. 처리결과 통지(제50조제7항)	28
8.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제50조제8항)	31
9. 게시판 광고(제50조의7)	38
10. 앱 푸시(App-Push) 광고	39
11. 과태료 부과(제76조)	44



01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1)전송자에 관한 정보, 2)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의미
- 영리를 목적(부수적으로 영리목적이 있더라도 포함)으로 하는 자(법인도 포함)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방법을 준수하여 광고를 전송하여야 함(단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수할 필요 없음)



광고성 정보 예외는 어떠한 정보들이 해당 되나요?

-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전송하여 할 의무가 있는 정보 등이 이에 해당



고객에게 적립된 포인트(마일리지, 적립금) 소멸 안내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거래계약 및 거래관계 등으로 고객에게 제공된 포인트 등의 소멸을 안내하는 것은 전송자의 의무에 해당하고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
ex) 고객님의 ___포인트년.월.일. 소멸예정
- 정기적으로 고객에게 잔여 포인트를 안내하는 것은 재화 및 서비스 이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 포인트 소멸 예정안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포인트 사용을 촉구하거나 사용을 위해 직접적으로 상품이나 영업점을 알려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
- 또한 고객의 생일이나 결혼기념일 등을 이유로 고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포인트를 지급하면서 전송하는 정보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ex) 생일 포인트 1000점 적립



계약에 의해 고객에게 제공하기로 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계약을 통해 계약관계의 의무사항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 유료로 구입한 쿠폰에 대해 쿠폰 이용방법을 안내하는 정보는 계약관계에 따른 안내의무가 있는 내용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자는 영업을 하는 사람만이 대상이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에서 "누구든지"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야 함



비영리 법인이 전송하는 정보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영리법인이나 영리목적의 사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서 "영리"라 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를 의미하고,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기준으로서의 영리(즉, 이익을 그 구성원에게 배분하는지 여부)가 아님
- 비영리 법인에서 전송하는 정보는 정보의 성격을 판단하여 법인에게 수익을 가져다주는 경우에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 비영리 법인이 전송한다고 하더라도 재화 및 서비스 판매, 재화 및 서비스 판매 독려(마감시간 안내) 등의 정보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
ex) 대학교에서 신입생 모집 안내가 들어가는 정보 등을 전송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에 해당
- 따라서 비영리 법인이 전송하는 경우라도 수익을 얻기 위한 홍보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야 함
- 비영리법인이 보내는 법인소개나 안부문자의 경우에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국회의원실 정책알림문자"와 "호국원의 참배관련 안내문자" 등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비영리 법인이 참가비를 받고 학회 및 세미나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전송하는 정보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비영리법인(협회 등)에서 하는 학회 및 세미나 등의 정보는 참가비 등을 납부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 하지만 참가비 등을 받아 해당 행사외에 법인의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학회 및 세미나 등의 안내도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영업사원이나 보험설계사 등이 고객에게 보내는 새해인사, 생일축하, 기념일 축하 문자 등 안부 문자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해당 문자의 문구내용보다는 그 문구에 담긴 의미가 홍보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며,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하여 이를 전송하여야 함



홈페이지 가입자 등에게 보내는 뉴스레터(최근동향 및 소식 전달)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영리법인의 뉴스레터 자체가 기관의 홍보목적으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성 콘텐츠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
- 비영리법인의 경우 뉴스레터 내에 수익창출과(미술관 유료전시안내 등) 관련한 내용이 있는 경우 광고성 정보에 해당
- 언론사에서 보내는 뉴스레터가 기사로 한정되어 있더라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될 수 있음



수신자가 금전을 지급하고 제공 받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되나요?

- 수신자가 금전을 지급하고 제공받는 뉴스레터, 주식정보, 축산물시세 등의 정보는 계약관계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쿠폰 발급 안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쿠폰은 홍보목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



백화점회원 중 매년 일정 금액 이상을 사용한 회원을 대상으로 VIP회원을 선정하고 VIP회원 선정, VIP고객 주차권 증정, 라운지 출입, 기프트 증정, 바우처 수령 등 다양한 혜택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 문자를 전송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회원 등급 변경과 관련된 안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 하지만 차후에 지속적으로 VIP회원들에게 할인 및 백화점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



교육시설에서 수강생들에게 휴강(휴무) 공지를 안내 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계약관계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쇼핑몰 등이 고객이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상품에 대한 안내 메일을 보내는 경우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구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



“당사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많습니다. 예금주가 00대부(주)가 아닌 개인명의 시, 절대 입금하지 마시고 고객 만족실 02-555-1111으로 전화주십시오. 00대부(주)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고객에 대한 안전 또는 보안 관련 정보에 해당되고 당해 내용 외에 광고성 정보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



예금 만기도래 안내 문자, 예금 만기경과 문자, 대출 만기도래 안내문자, 대출 만기경과 문자, 대출 이자납입일 또는 이자납입금액 및 입금계좌 안내 문자등도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되나요?

- 계약 체결된 내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하기 위한 정보로 모두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되나요?

- 계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ex) 예금만기안내정보, 대출만기안내정보, 주문 처리내역정보, 배송정보 등
- 쿠폰도 계약상 지급의무가 있다면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 회원가입 처리 결과에 대한 안내 메일도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고객이 직접 렌탈 상담을 희망한다는 연락처를 남긴 경우 고객에게 연락을 하는 것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고객이 요구에 따라 전송하는 1회성 정보(견적서 등)의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고객이 상담한 후에 행사나 제품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요청을 한 경우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발송하는 1회성 정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해당 행사나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
- 고객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내는 것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로 보고 표기의무사항 등 정보통신방법을 준수하여 전송해야 함



직업소개를 의뢰한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보내는 것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구직정보 요청에 대해 1회성의 회신은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하지만 지속적으로 해당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동의를 받는 경우 정보통신방법 제50조 제1항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나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3항의 동의를 개인정보처리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해도 된다는 동의를 의미
- 하지만 정보통신방법 제50조제1항은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은 이용자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고 하는 경우 수신자가 광고를 보내도 된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의미
- 따라서 동意的 의사표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동意的은 별도로 받아야 함



고객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를 하면 100% 응모가 되는 경품의 경우 경품 당첨 안내 등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고객이 신청한 경품이나 사은품에 대한 정보 제공은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 고객이 신청한 적이 없음에도 발행되어 전송되는 경품이나 사은품 정보는 쿠폰과 같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



정치인들이 발송하는 선거 운동관련 문자도 개인의 이미지 홍보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여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해야 되나요?

-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의 규제 대상이 되려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어야 하지만, 선거홍보문자는 영리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를 준수할 필요 없음



설문조사(서비스 평가)를 하기 위해 보내는 정보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설문조사(서비스 평가)는 조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에게 해당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하거나 불만 사항을 조사하는 설문조사라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이외의 설문조사의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음
- 특히 특정 제품 선호도 조사, 소개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영리 목적을 가진다고 보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수 있음
- 설문응답을 유인하기 위하여 대가성으로 쿠폰을 지급하는 경우
 - 1)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이용쿠폰인 경우 설문조사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만,
 - 2) 전송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와 무관한 쿠폰(ex:커피쿠폰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예외로 볼 수 있음



공무원 학원에서 합격자를 상대로 합격자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고 홍보하는 것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광고성 정보에 해당



이벤트 방법적인 측면으로 이벤트 참여하는 사람의 발신번호로 친구나 가족 등에게 해당 이벤트를 알리는 추천문자전송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발신번호는 이벤트 참여자 번호, 받는 사람은 전송자 가족(친구)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이벤트 참여자에게 일정한 혜택(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며, 광고성 정보 전송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법을 지켜야 함
- 따라서 수신동의를 받고 광고를 전송하여야 하며, 전송시에는 표기외무 사항을 모두 지켜야 함
- 수신인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메세지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위반 될 수 있음
- 수신자의 수신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이벤트 참여자는 수신미동의(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및 이벤트 운영자는 "전송하도록 한자"(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에 해당하여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구매한 제품의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수신자가 사용하거나 구매한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보증, 리콜, 안전, 보안 관련 정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애프터서비스 정보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콘도예약 확인 정보에 콘도 이용과 관련된 부대시설 정보를 같이 첨부하여 보내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콘도예약 확인 문자는 "수신자와 체결한 거래를 용이하게 하거나, 완성 또는 확인하는 것이 목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하지만, 콘도와 관련된 부대시설 정보(노래방, 당구장 등)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



SNS서비스 중 친구찬스라고 해서 물건을 친구와 공유해서 같이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친구와 공유하기 위하여 상품을 친구에게 요청해 하하는데 이 요청의 경우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해당 요청 메시지는 친구에게 해당 광고를 친구에게 전송하는 것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



영리 법인인데 특정인에게 재능기부 등 요청 메일을 보내고 계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특정인에게 전송하는 계약관계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지역방송에서 방송출연을 한 지역주민에게 방송시청에 대한 안내문자를 보내는 것이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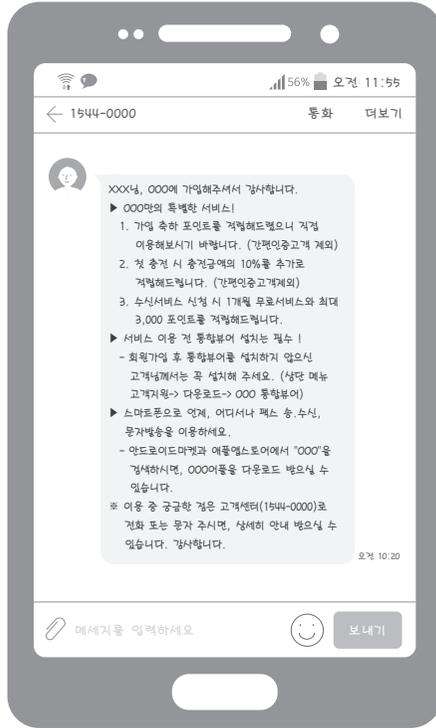


광고성 정보 예외 중 수신자의 신분 또는 지위 변경에 대한 정보가 무엇인가요?

- 회원 등급 등이 변경된 경우 안내하는 정보를 의미



아래와 같은 회원가입 처리 결과 안내정보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회원 계약에 따른 안내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라고 하는 정보가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안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하지만 이를 갱신하거나 재가입을 하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

- ex) "OOO고객님, 2015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확인해 주세요"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하지만 "OOO고객님, 2015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됩니다. 재계약(연장신청, 재등록 등)해주세요."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
- ex) "OOO님의 차량보험 만기일이 2017년 1월1일로 만기 30일 전 입니다. 확인바랍니다. 바로가기 URL"은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하지만, "OOO님의 차량보험 만기일이 2017년 1월1일로 만기 30일 전 입니다. 확인바랍니다. 인터넷 접속시 최대 49.9% 할인된 OOOO 자동차보험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OOOO 자동차보험 바로가기 URL"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



무료의 멤버십 회원 만료 안내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멤버십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고 유료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거래관계에 따른 계약사항 안내로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하지만 무료로 제공하는 멤버십의 만료 안내는 해당 멤버십에 대한 홍보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고객님 00검사결과 정상이오나, 염증소견이 보입니다. 내원 바랍니다.”,
“고객님 00검사결과 나왔습니다. 내원하셔서 상담받으세요”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되나요?**

- 병원 검진결과를 알려주는 정보에 "내원 바랍니다"와 "내원하셔서 상담받으세요"와 같이 해당 병원 방문을 촉구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 광고성 정보에 해당
- "고객님 00검사결과 정상이오나, 염증소견이 보이오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00검사결과 나왔으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단순히 검진결과만을 고지하는 경우 광고성 정보 예외로 볼 수 있음



영업시간 안내 및 휴무 안내 정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해당 업체에 대한 광고성 정보에 해당



**회사와 계약을 하고 회사의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판매자(혹은 대리점 등)
에게 보내는 교육 독려, 제품 안내 문자 등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회사와 계약한 판매자에게 보내는 정보는 "계약 체결에 따른 확인,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포털사이트 카페를 운영하면서 스폰, 제휴 등으로 광고 배너를 올려 부수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경우 카페 등에서 카페 회원들에게 보내는 쪽지나 이메일
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포털사이트 커뮤니티의 경우 친목도모 등을 위한 모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발송 정보의 성격을 보고 판단을 하여야 함
- 유료 서비스 제공이나 재화 판매를 위한 쪽지나 이메일의 경우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로 볼 수 있지만, 카페 소개나 초대, 행사안내 등의 경우에는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비광고성 정보(요금고지서 등)를 전송하면서 수신동의 요청을 해도 되나요?

- 수신동의 요청을 단독으로 보내면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만 비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부수적으로 간단한 수신동의 요청문구를 넣는 경우 전체가 비광고성 정보에 해당
- 이용고객에게 이용 재화 및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면서 끝에 간단하게 수신동의 요청하는 것도 광고성 정보 예외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유선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간단하게 수신동의 요청을 하는 것도 가능함



**비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사업자 홈페이지 URL이나 홈페이지 링크
배너 등을 넣어도 되나요?**

- 재화 판매 등 광고성 정보가 연결된 URL이나 광고성 정보 배너를 넣는 경우에는 전체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사업자의 홈페이지 URL이나 사업자 배너(로고)를 넣는 경우 비광고성 정보에 해당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서 말하는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사업자의 주요 서비스가 재화나 서비스의 판매가 아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날씨정보, 택배 위치정보 등)에 있는 경우를 의미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A가 수신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A의 서비스나 재화와 관련된 것이 아닌 B의 서비스나 재화에 대한 내용(맛집, 여행 숙소 정보 등)이고, 이로 인해 B등으로부터 A는 어떠한 수익도 받지 않는 경우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하나요?

- 안내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있는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가 이용자와 명시적인 계약체결을 하여 정보를 전송하되 정보내용이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야 함"에서 해당 재화 및 서비스는 전송자 본인이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제3자가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도 포함
- 가격비교 정보 제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가격비교 정보도 전송자인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아니지만 해당 제3자인 특정 회사의 재화 및 서비스의 구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
- 할인 항공권 정보 등도 항공권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에 해당

02

수신동의(제50조제1항 본문)



안내서상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이용 약관에 넣어 일괄적으로 받는 경우 수신자에게 약관 내용 중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규정을 별도로 고지한 후 동의를 받아야 그 수신동의의 효력이 있습니다”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 수신동의는 수신자가 본인이 광고성 정보를 수신한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동의를 받아야 법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수신동의라 할 수 있음
- 오프라인으로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약관에 광고수신동의에 관한 내용이 있음을 고지한 후 약관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함
- 온라인의 경우에는 별도로 본 약관에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가 포함되어 있음을 표기하여 안내하거나, 혹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창을 별도로 두어야 함
- 명시적으로 수신동의를 받도록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기 전(2014년 11월 29일 이전)에 약관을 통하여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그 동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다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



회원가입시 “문자서비스 수신동의”나 “정보메일서비스 수신 동의”에 동의 체크를 받는 것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로 볼 수 있나요?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수신자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임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게 한 뒤에 받아야 하며 따라서 "문자서비스 수신동의"나 "정보메일서비스 수신 동의"를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로 동일시하는 것은 부적합 함
- 해당 수신동의는 전송자가 고객에게 보낼 일반적인 정보에 대한 수신매체 선택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로 볼 수 없음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각의 서비스 사이트(홈페이지)가 통합회원으로 운영되더라도 광고전송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 통합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홈페이지)에 대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하였다고 하여 다른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로 볼 수 없음
- 통합회원이라고 하더라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서비스나 브랜드에 대해 각각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고, 만약 통합회원 가입시 명시적으로 모든 서비스와 브랜드 등을 모두 고지한 다음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모든 광고전송이 가능
- 같은 그룹의 백화점, 마트, 영화관 등이 통합회원으로 운영되더라도 광고를 보내려면 각각 동의를 받거나 모든 서비스를 명시하고 포괄적으로 수신동의를 받아서 광고를 전송하여야 함(ex : 백화점에 대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하였다고 하여 마트나 영화관 광고를 보낼 수 없음)
- 수신거부도 동일하게 적용됨



회사에서 제공하는 제품이 여러 개 일 경우, 한 제품에 대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으면 다른 제품에도 동일하게 처리해도 되나요?

-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여 받았느냐에 따라 달라짐
- 만약 게임서비스를 하는 A회사가 통합 홈페이지(모든 게임이 올라와 있는 홈페이지)에서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A회사가 운영하는 모든 게임 앱에 대해 수신동의를 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즉 질문과 같이 한 제품에 대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의 회원에 대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받은 경우 회원에게 다른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침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하지 않는 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범위반에 해당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위반은 아님
- 하지만 수신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광고 수신 동의를 받을 때 이메일, SMS등 수단별로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아니면 광고 수신동의를 받으면 수단은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 수단별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
- 일단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으면 수신자에게 동의 받아 수집한 연락처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기존거래관계에 있는 자에게 수신동의를 요청하는 정보를 전송해도 되나요?

- 수신동의 요청하는 것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만 기존거래관계에 있는 자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후 6개월 이내에 동종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광고수신동의를 요청하는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법인이 팩스를 사용하는 경우 팩스에 대한 수신동의를 누구에게 받아야 되나요?

- 팩스를 사용 중인 해당 법인 대표나 팩스 담당자가 있다면 해당 담당자에게 받으면 됨



사업장(법인 등)을 인수할 때 고객DB를 전달 받게 되는데, 기존에 광고 수신 동의를 한 고객에게는 인수자가 광고를 전송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문제가 없다면 광고수신동의에 의해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
- ex) xx렌터카가 oo에게 인수되어 oo렌터카가 되더라도 oo렌터카는 xx렌터카에 수신동의한 고객에 렌터카 관련 광고 전송가능



기존에 수신동의 여부가 불명확한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나요?

- 명시적인 수신동의를 받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야 함



A업체가 B업체를 대리하여 수신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하나요?

- A업체의 수신동의란에 "B업체가 전송하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로 표시하고 체크란을 두어 동의를 받는 경우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있음



회사에 대해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대리점에 대한 광고가 가능하나요?

- 대리점이 회사 상품에 대한 광고는 가능하나 해당 대리점 자체에 대한 광고는 불가
- 대리점 자체에 대한 홍보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수신동의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3항 동의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3항 동의는 전송자가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수신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에 해당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 동의는 전송자가 보내는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해당하며 따라서 두 개의 동의는 구분 후 별개로 받아야 함

03

수신동의 예외(제50조제1항 단서)



수신동의 예외는 무엇인가요?

- 고객과 기존거래관계에 있거나 방문판매등의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육성 전화권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음
- 기존거래관계는 고객과 거래를 통해 고객의 연락처를 수집한자는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을 말함(단,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이 끝난 후 6개월까지 가능)
- 기존거래관계는 고객이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 성립을 하는 것이며, 무료로 재화 및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기존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서비스를 제공 중에도 거래관계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
- "전화권유판매"란 육성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알리고 재화 및 서비스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되지 않음
- "육성"이라 함은 광고 문구를 녹음한 ARS나 기계음이 아니라 직접 대화가 가능한 상담원이 전화를 하는 것을 말함
- 수신동의를 받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화권유를 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 한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음



기존거래관계에서 회사(법인)의 직원이 고객의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연락처를 직접 수집한 자는 누가 되나요?

- 거래당사자가 회사(법인)인 경우 담당직원이 고객의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라도 연락처를 수집한 자는 해당 회사(법인)가 됨
- 따라서 담당직원이 바뀌어 다른 직원이 당해 고객에게 기존거래관계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더라도 기존 거래관계가 적용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받는 목적은 배송을 위해 서입니다. 이 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없이 전자우편 또는 연락처로 광고를 보내도 되는 것인지요? 제50조에 대한 위반은 아니지만 이용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법 규정에 위배되나요?

-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 이용목적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본 규정이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에 따라 우선 적용된다고 봄
-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수집 목적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획득한 후에 해당 연락처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야 함



B TO B거래를 한 후 기존거래관계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는 회사 대표연락처로 보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담당자에게 보내야 하는 건가요? 담당 직원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직원에게 전송을 하여도 되나요?

- 기존거래관계를 이용한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는 기존에 거래를 할 때 수집하였던 연락처로만 전송이 가능함
- 따라서 대표연락처인지 어느 직원의 연락처인지를 묻지 않고 거래시 수집하였던 연락처로 하면 됨



영업점을 인수하여 기존고객 정보를 획득한 경우 해당 고객들에게 광고를 전송할 수 있나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가 있어 이를 합법적으로 인수한 경우 기존에 고객들이 수신동의를 한 것은 그대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수신동의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은 가능
- 만약 수신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거래관계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거래관계를 통해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 정보를 넘겨받은 인수인은 기존거래관계로 광고성 정보 전송은 불가



사업주체인 법인은 그대로 있고 대표만 바뀌는 경우 기존 거래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나요?

- 계약 당사자가 고객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가 바뀌더라도 기존거래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나 직원이 변경되더라도 기존거래관계가 그대로 유지됨



지속적으로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 기존거래관계가 인정되나요?

- 이통사와 고객의 휴대전화 이용계약, 인터넷 사용 계약, 렌탈 계약과 같이 거래관계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기존거래관계로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입한 고객의 번호로도 기존거래관계에 따른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하나요?

- 배달 또는 물품 수령을 목적으로 번호를 전달하는 것과 달리 현금영수증은 광고성 정보 전송자와의 거래를 위하여 수집한 번호가 아니며, 현금영수증 적립자 번호와 고객 번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됨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한 고객에게도 기존거래관계로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하나요?

- 고객에게 받은 수신 동의는 지속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거래유무와 상관없이 광고전송이 가능하고, 기존거래관계에 따른 광고전송은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가 없을 때 적용



고객이 회원가입하면서 연락처를 입력한 후, 차후에 고객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거래관계가 존재하지만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 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회원가입시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 고객이 재화나 서비스 구매할 때 마다 불필요한 고객 정보 입력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도록 한 경우 고객이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면서 기존에 입력하였던 연락처를 다시 입력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음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법상 육성 TM(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수신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스팸관련 규정(표기의무사항 등)을 준수해야 되나요?

-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도 정보통신망법상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양법이 적용되는 상황이지만, 수신동의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에서 예외를 인정하여 준 것임
- 스팸 관련 규정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만든 법 규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없고 이를 배제하려면 명확한 배제규정을 두어야 함
- 따라서 육성 TM이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더라도 수신거부시 광고전송 금지(제2항), 야간광고전송시 별도의 동의도 필요(제3항), 표기의무사항 준수(제4항), 수신거부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제7항), 야간광고전송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 매2년마다 수신동의여부를 확인(제8항)하여야 함



골프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고객의 골프장 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골프장을 이용한 고객에게 기존거래관계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하나요?

- 예약대행을 통해 수수료 등을 받는 경우 기존거래관계가 성립하여 수신동의예외에 해당할 수 있음
- 그러나 별도의 수수료 등을 받지 않고 무료로 이용하는 경우 기존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 링크 및 소개 등을 통해 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도 기존거래관계가 성립함



'16년 9월 23일 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2호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고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전화권유판매자가 수신자의 이름, 연락처 등을 어디에서 수집하였는지를 고지하여야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의 예외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임
- 따라서 전화권유 판매자가 육성으로 TM을 하는 경우라도 수신자의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



포털 등의 검색 기능을 통해 오픈된 연락처로 전화를 건 경우 “수집출처 고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 "000에서 검색하여 전화드렸습니다"와 같은 문구로 고지하는 것으로 가능



TM을 위해 무작위로 번호를 눌러서 수신자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 수집출처를 어떻게 고지해야 되나요?

- 수신자에게 무작위로 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걸었다고 안내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2호의 수집출처 고지로 볼 수 있음
- 하지만 수동으로 누른 것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번호를 생성하여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5항2호에 따라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음



수신동의를 받고 TM을 하는 경우에도 수집출처를 고지해야 되나요?

- 수신동의를 받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제50조제1항본문)나 기존거래관계(제50조제1항1호)에 근거하여 하는 TM의 경우에는 수집출처를 고지할 필요가 없음
- 제50조제1항2호에 근거하여 수신동의 예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 수집출처 고지가 필요



사업자가 사업자(B2B 관계)에게 명함 등 서면으로 직접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수신동의 예외 사유로 볼 수 있나요?

- 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명함 등 서면으로 직접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거래 청약의 유인 단계로 수신동의 예외 사유로 볼 수 있음
- B2C(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연락처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상의 거래가 발생하여야 수신동의 예외 사유로 볼 수 있음
- 고객이 사업자(B2C관계)에게 명함을 제공하더라도 이는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04

수신동의 철회 및 수신거부(제50조제2항)



수신거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는 언제 인가요?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시점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부터는 광고를 전송하면 법 위반이 됨
- 수신거부를 하는데 1-2일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함



문자로 광고 전송 후, 문자를 받은 수신자가 수신 거부를 했을 때, 전송했던 매체에 대해서만 거부처리 해야 되나요?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문구는 일반적으로 수신거부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수신동의 철회의 의미도 함축되어 있음
- 수신자가 범위를 정하지 않고 수신거부를 하였다면 모든 광고성 정보의 전송을 거부(수신동의철회)하였다고 판단하면 됨



가입한 (휴대)전화 명의자가 변경되어 가입자(서비스 이용자 혹은 수신동의자)가 아닌 현재의 (휴대)전화 명의자가 수신거부를 하는 경우 수신거부를 해야 되나요?

- 현재 휴대전화 명의자가 해당 휴대전화에 대해 수신거부를 요청한 경우 수신거부 처리를 하여도 됨



계약해지가 수신거부로 볼 수 있나요?

- 홈페이지 탈퇴는 수신거부로 볼 수 있지만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 의사표시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함



고객이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해 범위를 정하지 않고 수신거부를 하는 경우 전체에 대한 광고성 정보 전송이 금지 되나요?

- 전체에 대해 광고성 정보 전송을 거부한 것으로 봄



수신자가 광고 문자에 적힌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통해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수신자가 수신거부의 범위에 대한 특별한 지정을 하지 않았다면 전송자(회사)에 대한 수신거부로 보아, 광고문자 외에 e-mail 등 다른 매체에 대한 수신동의도 철회한 것으로 봐야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상 스팸 관련된 규정들은 국민들 즉 수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임
- 입법 취지에서 보면 수신자가 전송자에게 범위를 정하지 않고 수신거부를 하였다면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성 정보에 대해 거부를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
- 즉 광고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특정을 하지 않았다면 전체에 대해 거부를 한 것으로 봄



이용자가 3개까지 계정(아이디)을 만들 수 있어서, 이용자 A가 A^^, BBB, CCC의 계정을 만들면서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란에 자신의 동일한 이메일 DDD@EEE을 기재한 경우, A^^계정에서 해당 메일의 수신거부를 접수하게 되면, 나머지 BBB, CCC계정에 대해서도 수신거부를 적용해야 되나요?

- 입법 취지상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한 경우 모든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계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 수신자의 이메일 주소와 해당 휴대전화번호로 수신거부가 들어오면, 계정과 상관없이 당해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안됨
- 따라서 특별히 범위를 정하여 수신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면 수신자의 모든 계정에 대해 수신거부를 적용



이메일 수신거부시 해당 이메일 주소에 여러 고객이 붙어 있는 경우(누가 거부한 것인지 알 수 없을 때) 추가정보를 물어봐도 되나요?

- 이메일 수신거부시 추가정보를 입력하게 하여서는 안되며, 해당 이메일 주소에 대해 모두 수신 거부처리 하면 됨

05

야간수신동의(제50조제3항)



야간(밤9시부터 아침8시까지)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전송자가 발송한 시간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수신자에게 도달한 시간을 의미하나요?

- 입법 취지가 수신자의 수면권과 평온권을 보호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간을 의미한다고 봄
- 시스템 등의 문제(딜레이)로 전송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야간에 광고가 전송된 경우 이를 충분히 소명하여야 함



이메일 광고 전송은 야간에 수신동의가 없더라도 전송할 수 있는 것인가요?

- 이메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사전에 수신동의를 받아야 하며, 야간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추가의 동의(광고성 정보 전송 동의 + 야간광고 전송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메일의 경우 야간광고 전송 동의 예외로 보고 있어 야간 광고 전송에 대한 동의는 불필요

06

표기의무(제50조제4항)



전송자의 명칭에 업체명을 적어도 되나요?

- 전송자의 명칭은 수신자가 해당 전송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면 되며, 업체명 뿐만 아니라 서비스 명을 사용하여도 됨
- 일반적인 수신자가 전송자를 식별할 수 없는 명칭(단축명칭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전송자의 명칭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봄



고객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표기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되나요?

- 광고성 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신동의를 한 사람에게만 보낼 수 있으며, 수신동의를 한 사람에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표기의무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 보내야 함



처리결과 통지나 수신동의여부 확인 안내를 위하여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 (광고)를 붙여야 되나요?

- 해당 정보는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요구하는 것이고 광고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를 붙이지 않고 보내도 됨



홈페이지 접속시 팝업창이 뜨는 경우 팝업창도 표기의무사항을 준수해야 되나요?

- 고객이 직접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여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경우에 그 홈페이지에서 뜨는 팝업창의 경우에는 스팸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수신동의 및 표기의무사항 등을 준수하지 않아도 됨



무료 번호인 080번호를 넣는 경우 "수신거부"만 기입하여도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별표6에서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함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무료"임을 표시하여야 함



발신번호랑 연락처가 동일한 경우에도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나요?

- 발신번호가 연락처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경우 즉 발신번호로 수신자가 전송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락이 닿는 경우에는 광고성 정보 내에 연락처를 별도로 기입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
- 만약 발신번호로 전송자와 직접적으로 연락이 되지 않거나 허위의 번호인 경우에는 표기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됨



발신번호를 080 무료수신거부 번호로 넣어서 전송 하는 경우 본문에 080 번호를 기입하지 않아도 되나요?

- 080 무료수신거부번호가 발신번호(회신번호)로 되어 있는 경우에 무료수신거부방법을 안내만 하고 번호는 별도로 넣지 않아도 됨
- '무료수신거부 : 통화'로 명시하면 됨



무료수신거부번호를 080 번호가 아니라 웹링크를 넣어 링크를 타고 들어와 수신거부 할 수 있도록 해도 되나요?

- 무료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인터넷이 되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있기 때문에 웹링크 방식에 따른 수신거부 방식을 안내하여서는 안됨
- 스마트폰이 아닌 2G폰 사용자의 경우 데이터가 소진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6항에 위반될 수 있음



LMS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제목과 본문이 있는데 (광고)는 어디에 적나요?

- 법에서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기입하도록 하고 있음
- 휴대전화별로 제목이 본문에 표시가 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목과 본문에 모두 넣고, 둘 중 하나만 넣는 경우에는 본문내용 앞에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이메일 광고 전송시 수신거부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에 대한 안내를 한글 및 영어로 둘 다 안내해야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따른 별표6에서 이메일 광고 전송시 수신거부 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한글 및 영어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표기하여 안내하여야 함



광고 전송시 이미지로 하여 이미지 내에 표기의무사항을 기입해서 전송 하여도 되나요?

-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기의무사항인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방법은 이미지 내에 넣어서 전송하면 안됨
- 광고 내용은 이미지로 하여 전송하여도 되지만 정보통신망법에서 반드시 넣도록 하고 있는 문구는 텍스트로 표기 하여야 함
- 애플리케이션에서 푸쉬 알람을 이미지로 보내는 경우에는 필터링과 무관하기 때문에 표기의무사항을 이미지에 포함 하여도 되는 것과 구별



이메일의 경우 수신거부 버튼을 운영하지 않고 무료수신거부 번호를 기입 해도 표기의무사항을 충족하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4항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61조제3항에 규정된 시행령 별표6을 보면 전자우편의 경우 "수신자가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내문을 명시하고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여부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고 규정
- 수신거부는 기본적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에서 쉽게 수신거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이메일의 경우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내서에 나와 있는 방식과 같은 수신거부 방법을 이용하여야 하며 무료수신거부 080번호 등을 이용하여 수신거부를 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또한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당시 전화기가 없는 이용자는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안내서에 나와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 안내해야 함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를 넣어도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6을 보면 이메일 광고 전송시 연락처의 예시로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로 되어 있지만 모사전송 및 그 밖의 전자적 전송매체는 전화번호화 또는 주소로 되어 있음
- 따라서 전자우편을 제외하고 다른 매체에서는 연락처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없음



음성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에서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을 안내하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 수신자가 광고, 홍보, 판매 등의 목적으로 전화가 왔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을 의미함



이메일 광고 전송시 [수신거부]를 클릭할 때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도록 해도 되나요?

- 로그인을 요구하는 것은 안되지만 이메일 수신거부시 해당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 하지 않음



육성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 안내서에 나와 있는 예시와 같이 080 무료 수신거부번호를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상담원에게 거부 의사를 표시하라고 안내하는 경우에도 수신거부방법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안내원이 육성으로 음성광고를 하면서 수신거부를 하고 싶은 경우 본인에게 직접 이야기 해달라고 먼저 수신거부 방법을 안내 한 후에 광고내용을 안내하는 경우 별도의 무료수신거부번호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수신거부방법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



육성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광고를 의미하는 음성,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 수신인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광고내용을 안내하기 전에 필히 안내해야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6에 근거하여 광고내용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전에 위 사항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080 무료수신거부번호로 전화를 하는 경우 상담원과 24시간 연결되도록 운영해야 되나요?

- 일반적인 영업시간 동안만 상담원 연결로 운영하여도 됨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광고하는 경우 (광고)와 수신거부등의 방법을 한글로 명시해야 되나요?

- 국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광고를 전송하는 경우 (광고)를 표기할 필요 없이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발송을 하면됨
-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국외에 거주하는 내국인에게 전송하는 경우에는 (광고) 등 표기의무를 준수하여 전송하여야 함



수신거부 방법을 "수신거부(무료) 080-888-1992"로 표기하여도 되나요?

- 법에서 요구하는 것은 수신자가 무료임을 알수있게 하여야 한다는 것과 해당번호로 전화를 하였을 경우 수신거부를 할 수 있음을 안내하도록 하는 것임
- 문자수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무료"라는 단어와 "거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위와 같이 표기를 하더라도 법에 위반되지 않음
- 하지만 수평수신거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표기하는 경우 처벌이 될 수 있음



이메일 광고 전송시 연락처로 이메일 주소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메일 주소를 직접 표기하지 않고 “이메일로 문의하기”와 같이 표기 후 이메일 문의 창으로 링크를 걸어두어도 되나요?

- 이메일 주소를 표기하지 않았지만 이메일을 작성하여 전송자에게 회신이 가능한 별도의 표기(1:1 이메일 상담창 등)를 둔 경우처럼 이메일로 회신이 가능한 방식을 표기하여 조치를 취해 준 경우 이메일 연락처를 표기한 것으로 봄



광고성 정보 수신자가 전송자가 제공한 방식으로 수신거부시 수신거부자 본인인증 절차를 넣는 경우 법에 위반 되나요?

- 수신거부 방식 제공시 수신거부방법에 대해 본인인증 절차를 넣는 것은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에 위반 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음



문자광고 전송시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를 항상 광고 앞에 나오도록 명시해야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별표6에서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를 표시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음
- 따라서 (광고), 전송자의 명칭, 연락처는 광고 본문 앞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함

07

처리결과 통지(제50조제7항)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시 수신동의를 받는 화면에서 저장되었음이 나올 때 수신동의 처리결과를 팝업을 띄워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나요?

-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1)전송자의 명칭, 2)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 3)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4) 처리 결과를 모두 포함하여 안내를 하면 가능함



육성으로 수신거부를 하는 경우 수신거부를 처리한 후 곧바로 상담원이 수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도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에서 요구하는 1)전송자의 명칭, 2)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사실, 3) 해당 의사를 표시한 날짜, 4) 처리 결과를 모두 포함하여 안내를 하면 가능함



처리결과 통지시 날짜를 “금일” 또는 “오늘” 이라고 표현해도 되나요?

- 안내사항에 날짜를 넣은 이유는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의사표시를 언제 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임
- "금일"등으로 안내를 하는 경우 차후에 이를 확인할 때 해당 날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일로 안내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음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7항 처리결과와 통지시 다수의 매체가 있는 경우 어느 매체로 해야 되나요?

- 휴대전화, 이메일 등 매체별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필요 없이 전송자가 하나의 매체를 선택하여 통지 하면 됨
- 휴대전화로 수신거부가 오더라도 이메일로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것도 가능



수신거부 처리결과를 통지 할 때 수신자가 차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전송하여 주어야 되나요?

- 수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 할 때 수신자가 차후에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녹음, 복사, 캡처 등이 가능한 형태로 통지하여야 함
- 동의를 받은 후 처리결과를 팝업 형태로 띄워서 통지하는 것도 가능



애플리케이션에서 수신동의 설정 변경시 처리결과 통지를 해야 되나요?

- 설정 등의 메뉴에서 수신동의 설정을 바꾸는 경우 해당 설정 변경이 광고전송자의 서버상의 설정을 바꾸는 경우에는 수신거부에 해당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하지만 단지 앱 설정을 바꾸는 것이어서 광고전송자의 서버에서는 알 수 없고 전송자는 전송을 하지만 단순히 수신자에게만 수신이 되지 않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신된 정보를 수신자가 단순히 안보겠다는 의미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별도로 통지 하지 않아도 됨
- 전자의 설정변경인 경우 바로 팝업을 띄워서 처리결과를 통지를 하는 방식으로도 가능



현장에서(오프라인에서) 주문 등록 등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의 수신동의에 체크가 된 경우, 이를 시스템 등록 후 14일 이내에 수신동의에 대한 처리 결과를 발송해야 되나요?

- 수신동의 처리결과 통지의 기산점은 수신자가 의사표시를 한 때이며 따라서 계약서상에 수신동의를 체크한 이후 14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시스템 등록한 이후 14일이 아님



처리결과 통지에서 서버에 등록된 기준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받은 기준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카드 모집자가 카드신청을 오프라인으로 받아서 서류상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해당 서류상 내용(광고수신동의)이 카드회사 서버에 등록되기 까지 시간이 하루 이상이 걸릴 수 가 있는데, 14일의 기산점 기준이 서버에 등록된 날이 아니라 고객이 서명을 한 날이라는 의미임



처리결과 통지를 14일 이내라고 하였는데 가령 1월 1일 오후 3시에 동의 철회하였다면 1월 15일 오후 3시까지 통지해야 되나요?

- 14일 이내는 의사표시를 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월 15일 24시까지임



처리결과 통지에 대한 증명을 전송자가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면 이를 증명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 처리결과를 통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족하고 해당 시스템을 통해 처리결과가 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서면 회원가입(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계약을 한 고객에게 해당 회원가입 및 계약 상태에 대한 확인을 하는 해피콜을 하면서 수신동의 처리결과 통지도 같이 하여도 되나요?

- 가능함



수신자가 수신동의를 하였다가 수신동의를 해제하였다가 다시 수신동의를 하는 등 수신동의와 수신동의 철회를 반복한 경우 매회별로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되나요?

- 법에서 해당 날짜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일에 최종적으로 체크된 것으로 처리결과를 통지를 하면 됨 (매회 하지 않고 날짜를 기준으로 처리결과를 통지함)



온라인에서 가입 후 오프라인 즉, 백화점에 내점 하여 수신거부를 하는 경우 현장에서 즉시 처리하고, 구두로 완료되었음을 고지하고 있는데, 대면 업무이다 보니 증빙자료가 따로 없는 경우 기존처럼 현장에서 처리 후 결과를 구두로 처리되었음을 알려도 되나요?

- 현장에서 구두로 즉시 안내 하여도 되지만 해당 방법으로는 차후에 고객이 처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할 시에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명 등 증빙을 남겨야 할 필요가 있음



수신동의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지하는 경우 문자내에 표기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광고성 정보를 추가하여 전송하여도 되나요?

- 처리결과 통지는 법에서 반드시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광고성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필터링 처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리결과 통지만 내용으로 하여 전송해야 함



회원 가입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체크란을 두고 이용자에게 선택을 하도록 한 경우 처리결과 통지를 해야 되나요?

-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 체크란을 두고 이용자에게 체크를 하도록 한 경우 처리결과 통지를 하여야 함
- 하지만 이용자가 아무런 체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신동의 및 수신거부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리결과 통지 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 이 경우 수신동의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홈페이지 회원 탈퇴를 한 고객의 경우 개인정보가 삭제되어 마케팅을 진행하지 않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탈퇴시 수신거부 처리결과 통지를 해야 되나요? (명시적 수신거부는 하지 않았으나, 탈퇴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마케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임)

- 처리결과 통지는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표시하였을 경우 하는 회신으로, 이는 수신거부를 하였음에도 재차 광고가 전송된 경우 수신거부 하였음을 차후에 증명을 할 수 있는 증적자료를 마련하기 위함임
- 따라서 탈퇴로 인한 수신동의 철회 간주의 경우 별도로 처리결과를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됨

08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제50조제8항)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가 무엇이며 모든 회원들에게 해야 되나요?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하여 수신자에게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수신자에게 수신동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한번씩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수신동의자에게 안내하여 주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는 회원 중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한 회원에게만 하면 됨
- 수신동의 했다는 사실을 안내하라는 것이지 수신동의를 다시 받으라는 것이 아님에 유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2014년 11월 29일)되기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고객들에게는 언제까지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해야 되나요?

-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사람은 동법 시행령 부칙 제6조에 따라 2014년 11월 29일에 동의 받은 것으로 보아 2년 후인 2016년 11월 28일까지 확인 안내를 하여야 함

* 제6조(수신동의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 제6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에 해당 수신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기간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도 되나요?

- 2년 내에 받는 것이라면 기간을 정하여 일괄적으로 할 수 있음
- ex) 2015년 1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은 수신동의를 2016년 12월 31일에 일괄적으로 확인 안내 가능



2015년 1월 31일에 수신동의를 한 고객에게 2017년 1월 30일까지 수신동의여부 확인 안내를 하여야 하는데, 만약 2016년 12월 31일에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 안내를 한 경우, 다음번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는 2018년 12월 30일 이전까지 해야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에 보면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확인 안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번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가 아니라 2019년 1월 30일 이전까지 하면 됨



회원이 로그인 했을 때 비밀번호 변경 안내와 같이 로그인시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안내하는 방식도 가능하나요?

- 동일 페이지나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서 비밀번호 변경 안내와 같이 확인 안내를 하는 것은 가능(팝업으로 확인 하는 것은 안됨)
- 하지만 2년 이내에 로그인을 하지 않는 수신동의자에게는 별도의 확인 안내를 하여야 함
-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도록 전송자는 수신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지만, 로그인을 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정보가 수신자에게 전송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순히 로그인을 하면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만 해놓은 것으로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수 없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시 가입자가 집 전화번호 외에 휴대전화와 E-mail이 모두 없는 경우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 집 전화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 안내를 하여야 함
- 집 주소를 아는 경우 우편으로 안내를 하여도 됨
-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는 법에서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회사에서 회원에게 문자와 메일에 대해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았는데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각각 따로 해야 되나요?

- 회원의 수신매체와 상관없이 전송자가 편한 것으로 하나를 선택해서 회원에게 한번만 안내하면 됨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였는데 수신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수신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전에 하였던 수신동의 의사표시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봄
- 수신동의 유지의사 확인 안내를 하는 것만으로 제50조제8항 의무를 충족



수신동의여부 확인 안내에 대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수신동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럼 2년 뒤에 또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 안내를 해야 되나요?

- 수신동의를 한 날로부터 4년이(2년+2년) 되기 전까지 확인 안내를 하면 됨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3은 최초 동의한 날로 부터 매2년마다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마다 다시 안내 하여야 함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서 정보 하단에 수신동의여부 확인 안내 문구를 넣어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의 수신동의여부 확인 안내는 법에서 정하는 의무사항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을 필터링한 고객에게 해당 고지가 수신되지 않을수 있기 때문에 광고성 정보와 별도로 안내 하여야 함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메일 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사용자에게 정상적으로 수신 안 될 수 있는데 법적 의무를 다한 것에 해당 되나요?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메일을 정상적으로 발송하였다면 수신자에게 수신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다하였다고 봄
-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해 수신자가 수신거부설정을 해놓거나 해당 메일을 읽지 않더라도 법적 의무는 충족하였다고 봄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회원이 이메일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해서만 거부를 하였더라도,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이메일로 해도 되나요?

- 법률상으로는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는 광고성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한 광고성 정보 수신을 거부한 경우라도 전송자가 이메일을 통하여 확인 안내를 하여도 됨
- 즉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는 전송자가 자유롭게 매체를 선택할 수 있음
- 하지만, 고객이 이메일로 수신을 거부한 상태에서 보내는 경우 분쟁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고객이 광고성 정보가 아니라 난 어떠한 정보도 수신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문제기 제기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에 따라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회원 정보를 파기(별도 저장)하는 경우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 안내를 해야 되나요?

- 타 규정에 의하여 회원정보를 삭제하거나 별도 보관하도록 하여 해당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자동으로 수신동의도 철회 된 것으로 보고 따라서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의무도 없어졌다고 봄



이용내역이 없는 이용자의 계정을 휴면계정(개인정보 별도보관)으로 둔 경우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의무가 없지만, 향후 정상계정으로 복원된 경우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언제 이행해야 되나요?

- 2015년 2월 1일 회원 가입(수신동의) 후 2016년 2월 2일자로 휴면계정(개인정보 별도보관)으로 두었다가 회원이 2017년 2월 1일 이전에 로그인을 하여 정상계정으로 복원한 경우 2017년 2월 1일 이전에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안내하여야 함
- 2015년 2월 1일 회원 가입(수신동의) 후 2016년 2월 1일자로 휴면계정(개인정보 별도보관)으로 두었다가 회원이 2017년 2월 1일 이후에 로그인을 하여 정상계정으로 복원한 경우, 첫 번째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의무는 지나갔으며, 향후 2019년 2월 1일 이전까지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면 됨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방법이 SMS, 이메일 말고 고객과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나요?

- 정보통신망법상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방법에 대해 특별한 방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안내하였다는 것을 증명 할 수 있게 증거자료를 남겨두어야 함
- 직접 대면하여 안내하는 경우 서면으로 확인받아두는 것을 권장



수신동의도 받고 기존거래관계가 지속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기존거래관계로 광고를 전송하기 때문에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2년 내에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거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해야 함



2015년 1월 1일에 수신동의를 한 고객이 2015년 4월 3일에 거부를 했다가 다시 ①2015년 4월 5일에 동의를 하고, 다시 2015년 6월 1일에 거부를 했다가 ②2015년 6월 3일에 동의를 하는 등 수신동의/거부를 반복하는 경우 수신동의여부 확인 안내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 최종 수신동의일을 기준으로 수신동의여부 안내를(2017년 6월 2일까지 확인)하면 됨
-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해 수신자가 수신거부설정을 해놓거나 해당 메일을 읽지 않더라도 법적 의무는 충족하였다고 봄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시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수신동의여부 확인 안내시 수신동의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되어 있지만 별도로 특별한 방식이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메일 광고 전송시 제공하는 수신거부 방법(기술적 조치)나 080 수신거부 번호를 제공하여도 되며, 홈페이지 내정보 설정 변경에서 가능함을 안내하여도 됨
- 단, 이용자에게 동의철회가 어렵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시 이용자가 수신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되나요?

- 수신동의 철회시 제50조제7항에 규정된 처리결과 통지를 해야 함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고객에게 보내는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나 고지서 이메일 등에 포함시키거나 해당 이메일 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Pop up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도 되나요?

- 이메일 고지서 등에 포함하여 보내는 경우 수신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민원 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메일 고지서 등에 포함하거나 Pop up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지 말고 별도로 안내를 하여야 함
- 우편 고지서에 동봉하여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고지서와 별개의 문서로 하여(별지 사용) 보내야 함



A회사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및 마케팅 활용 동의(제3자 제공 포함) 및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모두 받아 B회사에게 제공한 경우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여야 하는 회사는 어느 회사 인가요?

- A회사 B회사 모두 이용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을 안내하여야 함
- 단 A회사는 광고전송 의사 없이 단순히 B회사의 수신동의를 대신 받아준 경우(고객에게 A회사에 대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지 않음)에는 A회사는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의무가 없음



고객이 광고성정보 수신 동의를 하였으나, 고객과의 거래가 종료되어 향후 광고성정보를 전송하지 않을 예정임에도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해야 되나요?

- 개인정보 수집목적이 달성(거래종료)되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혹은 광고전송 계획이 없어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이력을 파기)한 경우 안내 하지 않아도 됨



실제 동의한 날짜가 전산상 입력된 날짜 이전이라는 사실만 아는 경우 동의 날짜를 언제로 해야 되나요?

- 2014년 11월 29일(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 시행일) 이전에 동의를 받은 회원은 2014년 11월 29일에 동의 받은 것으로 보고(개정시행령 부칙 제6조 참조) 진행하면 됨
- 이후 동의 받은 회원은 전산상 입력 날짜로 보고 안내를 하면 됨
- 만약 2014년 11월 29일 이후에도 동의일자가 체크되지 않는다면 1년에 한번씩 해당 고객에게 모두 수신동의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음



로그인이 없는 앱 서비스 이용자에게 기기에 대한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앱 푸시 알림으로 해도 되나요?

- 앱 푸시 알림외에 다른 연락 수단이 없는 경우(다른 연락수단이 있는 경우 해당 연락수단을 이용) 해당 이용자에 대해 푸시 알림으로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 가능
- 고객의 푸시 알림이 on인지 off인지는 상관없이 전송하였다는 기록으로 의무 이행 증명 가능
- 하지만 다른 연락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락수단을 이용하여 안내하여야 함



'16년 11월 28일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수신동의 고객에게 '16년 11월 1일자로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발송하고 2년마다 동일하게 발송('16년 11월 1일 발송 → '18년 11월 1일 발송 → '20년 11월 1일 발송)해도 되나요?

- 모든 수신동의 고객에게 '16년 11월 1일 전체발송 후 2년마다 모든 수신동의 고객에게 일괄 발송하는 경우 제50조 제8항 위반의 소지는 없음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 발급시 수신동의를 한 후 8개월 뒤에 다른 신용카드를 발급하면서 수신동의를 다시 한 경우 해당 회원에 대한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 최초 수신동의 후 수신동의 철회를 한 적이 없다면 최초에 하였던 수신동의일을 기준으로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면 됨



다수의 서비스에 대해 통합회원으로 관리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별로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해야 되나요?

- 각각의 서비스별로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도 각각 별도로 해야 하지만, 수신동의가 되어 있는 모든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고지 후 한번에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는 것도 가능



이용자가 '15년 12월 1일에 회원가입을 하면서 전화 · 이메일 · 문자에 대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였다가, '16년 6월 1일에 전화 · 이메일은 수신동의, 문자만 수신동의 철회 한 경우 2년마다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언제까지 ('17년 12월 1일 이전 인지 아니면 '18년 5월 31일 이전 인지)해야 되나요?

- 전화 · 이메일에 대한 동의는 15년 12월 1일에 받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17년 12월 1일 이전까지 전화 · 이메일에 대해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해야 함



'15년 1월경에 수신동의를 받기는 했는데 몇 일에 받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경우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 동의가 가능한 기간은 1월 1일부터 1월 31일이며, 따라서 가장 빠른 날인 1월 1일을 기준으로 '17년 1월 1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6년 12월 31일까지 1월에 동의를 받은 이용자들에게 대해 일괄적으로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면 됨



이메일과 문자에 동의한 사람에 대해서 이메일을 보내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하는 경우 수신 동의한 매체는 모두 알려주되 이메일 상 수신거부를 누르면 이메일에 대해서만 수신거부 한 것으로 구현해도 되나요?(이럴 경우 문자 동의 철회는 수신자부담 번호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해당 번호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 함)

- 고객이 올바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거부를 하였을 시 적용되는 매체 및 범위에 대해 이메일 상에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현할 수 있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에 대한 발송 이력(e-mail/sms)을 남기려고 하는데, 탈퇴 회원, 휴면 회원에 대해서는 기록을 별도로 보관해도 되나요?

-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에 대한 이력 정보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그 다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할 때까지 보관
-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한 후 회원이 탈퇴를 하거나 휴면회원이 된 경우에 향후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별도 보관 필요
- 이 경우 이용자의 모든 정보가 아닌 수신동의여부 확인 안내 증명과 관련된 정보만 분리해서 보관
- 해당 내용에 대해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함



광고성 정보 전송자가 두 개의 서비스(카드 및 여수신)계약을 각각 체결하며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두 개의 수신동의에 대해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를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되나요?

- 한 개의 법인에서 두개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객으로 부터 2개의 수신동의를 받은 경우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는 한번에 모아서 해도 되고, 두개를 나눠서 해도 됨
 - 한번에 모아서 하는 경우 카드에 대한 수신동의 확인 안내와 여수신에 대한 수신동의여부 확인 안내를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전송
- ex)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의 사실 및 수신동의일(카드수신동의 : 2015. 1. 1, 여수신수신동의 : 2014. 11. 28), 수신동의 철회 방식

09

게시판 광고(제50조의기)



게시판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게시판에 중고거래 등 물품을 사고 팔수 있는 게시판을 둔 경우에 해당 게시판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동의를 한 게시판으로 볼 수 있나요?

- 해당 게시판은 게시판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사전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올릴 수 있도록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동호회 카페 등에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광고를 올리려면 운영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판에 올리려면 운영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50조의기7제1항 단서에서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이란 어떤 게시판을 말하나요?

- 로그인을 하지 않거나 별도의 인증과정 없이 바로 누구나 게시글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을 말함



게시판 운영자나 관리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나요?

- 법에서 게시판 운영자나 관리자에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게시되지 않도록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없음



본인의 SNS에 광고성 정보를 올리면 친구들에게 광고성 정보가 보이게 되는데 문제가 있나요?

- 본인의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 친구들에게 나타나게 하는 것은 스팸관련 정보통신망법상 문제가 없음

10

앱 푸시(App-Push) 광고



앱 푸시(App Push)가 무엇인가요?

- 이용자가 스마트기기 등에 설치한 앱에서 배너 등의 형태로 운영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알림 기능을 말함



언론사나 포털 앱에서 제공하는 단순한 푸시 뉴스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되나요?

- 현재 기사를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푸시 뉴스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 정보제공을 서비스로 하는 자가 이용자와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이용약관 포함)하고 전송하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에 해당, 단 정보전송을 대가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정보내용이 서비스·재화 구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야 함



앱 푸시 알람의 허용(승인)/허용안함(승인거부) 설정이 “수신동의”기능을 대체할 수 있나요?

- 앱 푸시 알람의 허용 여부는 해당 기기에 수신된 정보를 화면에 띄워주겠다는 의미일 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해당하지 않음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는 해당 고객에 대하여 매체와 상관없이 광고성 정보를 수신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앱 푸시 알람 설정과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동일시 하면 안되고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대해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휴대전화 앱을 개발해서 앱을 통해 푸시 메시지나 뉴스레터를 보내려고 하는데 로그인 없이 앱을 실행하는 경우 수신 동의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앱을 처음 설치한 상태에서는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안되고, 앱을 처음 실행하였을 때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창을 띄워 동의를 받은 다음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야 함
- 수신자가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물어볼 필요가 없음
- 수신자가 로그인을 한 경우에는 수신자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설정에 따라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됨



비로그인 상태라 함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나요?

- 앱 시스템에서 유저의 회원 정보가 식별되지 않는 상태를 말함
-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식별이 되는 경우에는 기기에 대한 동의가 아닌 사용자에게 대한 동의를 받아서 푸쉬 광고를 전송하여야 함



앱 서비스를 로그인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ex. 트위터, 페이스북, 벅스 등) 로그인을 하는 경우, 한 제품 내에 로그인 받는 기능이 2개 이상이면(ex. 트위터, 페이스북, 벅스 등) 각각에 로그인에 대한 동의 여부를 따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 트위터 페이스북 등 해당 사용자가 동일함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로그인시마다 개별적으로 받아야 함



IOS는 기기의 설정값이 “거부”로 되어 있다면 앱에서 “동의”를 하더라도 고객은 푸쉬를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IOS 기기에서 설정변경은 푸쉬알림 설정변경에 해당하여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설정과는 상관이 없음
- IOS 기기에서 설정이 OFF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광고성 정보에 대한 수신동의를 한 고객에게는 정보를 전송하여도 됨
- 위 경우 단지 고객 기기상에 푸쉬 알림으로 표시가 안되는 것일 뿐임



앱 설치 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여부가 디폴트로 되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명시적인 안내 없이 디폴트로 되어 있는 경우 명시적인 수신동의로 볼 수 없음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에 대해 앱 설치전에 회원가입 등으로 이미 받아 둔 회원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별도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아놓지 않은 회원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앱 최초 실행 시(비로그인 상태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한 이후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을 경우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가 로그인 상태에서 유효하나요?

- 비로그인 상태에서 한 수신동의를 해당 기기에 대한 수신동의에 해당하기 때문에 로그인 후 회원에 대한 수신동의와 별개에 해당
- 따라서 로그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함



앱최초 실행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하면 비로그인 상태에서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가능하고, 로그인을 하여 설정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하면 광고성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데, 로그인 상태에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철회를 한 후에 로그아웃을 한 경우, 비로그인 상태에 있을 때 해당 매체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도 되나요?

- 고객이 로그인시에 수신거부를 한 경우, 디바이스 수신동의(비로그인시 수신동의)도 수신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봄
-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로그인값에 대한 수신거부와 기기값에 대한 수신거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없어 비로그인 상태에서 받은 수신동의에도 수신거부 의사표시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아 모두 수신동의 철회한 것으로 봄
- 따라서 비로그인시 광고를 전송하려면 다시 수신동의를 받아야 함



비로그인 상태에서 수신거부로 설정하였으나, 로그인 시 수신동의를 한 경우 비로그인 시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하나요?

- 로그인 중에 수신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회원에 대한 수신동에 해당하고 기기에 대한 수신동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로그아웃을 하면 광고성 정보 전송이 불가능



휴대전화 등의 앱 푸쉬 광고시에도 표기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되나요?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광고를 전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해야 하고 따라서 문자와 같이 표기의무 사항을 모두 지켜야 함
- 또한 야간광고전송도 적용되기 때문에 야간에 푸쉬 알림을 보내기 위해서는 별도의 야간광고전송에 대한 수신동의를 받아야 함
- 휴대전화 푸쉬 알림에 문구수의 제한이 있더라도 전송시에는 표기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알림을 전송하여야 함
- 따라서 "수신거부" 방법에 대한 안내 문구를 삽입해서 발송하여야 함



앱 푸쉬의 경우 글자수 제한이 있어 수신자의 화면에 표기의무사항이 모두 표기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신자의 푸쉬 알림창에 표기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송자는 표기의무를 모두 준수하여 전송하여야 함



앱에서 푸쉬메시지의 경우 길이가 짧아 표기의무사항이 모두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해당 푸쉬 메시지를 한번 클릭하면 표기의무사항이 모두 보이도록 하여도 가능하나요?

- 수신자의 기기에서 보이지 않더라도 전송자는 우선 모두 표기를 하여 전송하여야 하고, 추가적으로 수신자의 편의를 위해 클릭시 표기의무사항 등이 보이도록 조치하여도 됨



모바일 게임 앱의 푸쉬 서버에서 보내는 것이 아닌 모바일 게임 Client에서 보여주는 알림(Local Notification이라고도 함, 예시 : 무기 획득결과를 알려주는 푸쉬, 친구 맏기를 수락하였다는 푸쉬, 플레이에 필요한 에너지가 완충되었다는 푸쉬, 새로운 무기가 출시되었음을 알리는 푸쉬 등)도 광고성 정보에 해당 되나요?

- 해당 알림정보는 게임 실행도중 전송되는 정보가 아닌 게임 종료 후 게임실행을 유도(앱 실행을 유도)하는 정보에 해당하여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 단, 해당 정보가 이용자의 단말기에 설치된 앱 프로그램의 실행으로 보내진 푸쉬정보인 경우(인터넷이 끊겨 있더라도 보여지는 정보)에는 이는 "전송"에 해당되지 않아 스팸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비로그인 상태에서 수신 동의를 이용자에게 받는다면 사업자는 스팸 신고 시 이를 소명하기 위해 수신동의 여부와 관련한 정보(디바이스 정보 등)를 저장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용자가 언제 앱을 삭제하는지 알 수가 없어 지속적으로 보관이 필요한데 보관 기간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되나요?

- 법이나 정책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음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니 지속적으로 보관하고 있어야 할 것임
- 단지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신고가 거의 없으니 적절한 범위에서 각 전송자가 방침을 정해 보관할 필요가 있음



회원탈퇴를 하고 앱을 삭제하지 않고 수신동의 상태로 남아 있을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이 가능하나요?

- 회원 탈퇴를 하는 것은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탈퇴회원에 대해서는 기기에 대한 수신동의도 철회하였다고 보아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면 안됨



앱 푸쉬 알람 설정을 앱 설치 후 실행시 ON으로 설정하여 두어도 되나요?

-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와 푸쉬 알림 설정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법에서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만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푸쉬 알림 설정은 법상 아무런 의무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정자체를 받지 않고 그냥 알림을 띄워도 되며, 설정을 ON으로 돌지 OFF로 돌지는 모두 사업자의 자율에 해당



사업자가 4개의 앱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 앱별로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 앱 별로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다른 경우에는 앱 각각 별도로 수신동의를 받아야 함
- 비로그인 상태에서도 재화나 서비스 별 앱 기준으로 기기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함
- 단 통합회원으로 운영하는 경우 수신동의시 해당 서비스에 대해 모두 안내 후 일괄적 혹은 개별적으로 수신동의를 받는 것이 가능



앱 푸쉬 회원정보와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별도로 하여 운영(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별도로 운영)하여도 되나요?

-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가 별도로 운영된다는 안내문구를 제공하고 수신동의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 가능



앱을 통한 모바일 게임의 경우 회원가입을 별도로 받지 않고 있는데 동의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 후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별도의 수신동의 창을 띄워 동의를 받고 동의내역을 저장하여 두면 됨



온·오프라인 회원가입 후 앱 서비스 내 설정을 통해 광고성 정보 수신거부를 설정한 경우 문자 및 이메일 등 다른 매체를 통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연동해야 되는지?

- 앱 서비스 설정에서 수신거부로 설정 변경시 해당 수신거부는 앱 서비스에 대해서만 한정된다는 안내가 되어 있다면 앱에 의한 광고 전송만 수신 거부하는 것이 가능
- 처리결과 통지시 앱 서비스에 대한 수신거부로 한정하여 처리결과 통지를 해야 함
- 하지만 별도의 안내가 없이 앱 설정에서 회원이 수신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에 대한 거부로 봄



회원가입이 없는 앱 서비스에서 수신동의를 이용자의 단말기를 기준으로 받아 둔 경우 해당 단말기의 공장초기화 진행 후 이용자가 다시 앱을 설치한 경우 재차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 원칙적으로 회원정보가 없이 앱이 설치된 단말기 이용자에게 받았던 수신동의는 해당 기기에서 앱을 삭제하였다면 수신동의도 철회한 것으로 봄
- 하지만 앱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앱 삭제 혹은 공장초기화를 진행하더라도 해당 기기에 대한 수신동의 이력이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음(기존 수신동의가 유효함)” 을 안내한 경우 앱 삭제 혹은 공장초기화 이전의 수신동의는 계속 유효함

11

과태료 부과(제76조)



시스템오류나 직원실수에 따른 누락 등으로 수신동의 여부 확인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요?

- 과태료 부과를 하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한 후 판단



광고성 정보 수신자가 번호를 변경한 후 착신 신청을 하여 변경된 번호로 광고성 정보가 전송되어 변경된 번호를 기반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변경 전 번호에 대해 수신동의를 받은 전송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요?

- 과태료 부과를 하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한 후 판단
- 착신전환된 번호로 문자가 전송된 경우 [FW]가 붙어서 전송되기 때문에 신고가 되어도 별도로 처리됨



광고를 전송하였는데 실수로 표기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해 바로 바로 정정 문자 보낸다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 과태료 부과를 하는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한 후 판단



수신인이 신고를 하여 과태료 부과시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고객의 정보를 얼마나 보관하고 있어야 되나요?

- 기준은 별도로 없음



광고전송 후 개인정보 보유기간 만료에 따라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였는데 미수신동의 광고성 정보 전송으로 신고가 된 경우 수신동의 여부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차후 신고가 되었을 경우 소명을 하기 위하여 파기하지 말고 최소한 1년 이상 별도 보관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한 보관 기간 등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고지하고, 개인정보 보관 기간에 대해서 구체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



쇼핑몰 회원이 쇼핑몰에서 제공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지인)에게 상품을 사달라고 조르거나 이벤트를 안내하는 문자를 보내면 일정한 포인트 등을 지급하는 경우 쇼핑몰은 정보통신망법 제76조제1항의 “행위를 하도록 한자”에 해당 되나요?

-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게 한자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